통계조사원복무지침

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

006158

*** 等	* *
. 통 계 법	
2. 통계법 시행령	
3. 통계법 시행규칙	
4. 경제기획원 기구표	
5. 조사통계국 직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
5.통계사무소 펀제	
7 . 통계조사원 복무규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
	39
8 , 통계조사원 복무지침	
가, 임 용	
나, 교육운턴	
다. 복무위탁	
라, 승진후보자 결정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
- 바. 송 진	
바. 포 : 상 :	5
사. 근 태	
아. 장 계	5

法 律 第 980 号 1962 年 1 月 15 日公布 改正法律 第 1215 号 1962 年 12 月 12 日公布 改正法律 第 2799 号 1975 年 12 月 31 日公布

- 第1條(目的) 이 法은 統計에 관한 事項을 綜合的으로 調整하고 統計의 体系量 整備함으로써 統計의 真実性과 統計制度의 效率性 의 確立을 図謀함을 目的으로 한다.
- 第2條(定義)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점号화 같다.
 - 1. "統計"라 함은 指定統計와 一般統計를 말한다.
 - 2. "指定統計"라 함은 中央行政機関이나 地方自治団体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関(以下 "指定機関"이라 한다)이 作成하는 統計로서 経済企劃院長官이 指定하여 告示하는 調査統計의 報告統計를 말한다.
 - 3. "一般統計"라 함은 第2·号에 掲記한 機関이 作成하는 統計 中 指定統計 以外의 統計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統計을 말한 다.
 - 4. "調査統計"라 함은 調査한 資料에 의하여 作成하는 統計를 말한다.
 - 5. "報告統計"라 함은 報告된 資料에 의하여 作成하는 統計를 말한다.

- 第3條(統計作成의 承認) ①指定統計 또는 一般統計를 作成하고자하는 機関의 長은 그 統計作成에 관하여 미리 経済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 承認을 얻은 統計作成을 中止하거나 承認을 얻은 事項을 変更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.
- ②経済企劃院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関係行政機関이나 地方自治団体 또는 指定機関에 대하여 統計作成의 実施・中止・変 更 또는 統計作成事務의 改善을 要求할 수 있다.
 -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経済企劃院長官의 要求를 받은 機関의 長은 正当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応하여야 한다.
- 第4條(申告) ①中央行政機関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長은 指定統計作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個人 또는 法人이나 団体에 대하여 統計資料에 관한 申告를 命할 수 있다.
-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命令을 받은 者가 未成年者나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그 法定代理人, 法人이나 団体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가 申告하여야 한다.
- 第5條(資格) 統計作成에 関한 事務에 従事하는 者(第6條의 統計調查員을 除外한다)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라야한다.
- 第6條(統計調查員) 調查統計을 実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2條 第2号에 揭記한 機関에 그 統計을 作成하는 期間中 統 計調查員을 둘 수 있다.

- 第7條(実地調查) ①統計作成에 관한 事務에 従事하는 者(第6條의 統計調查員을 包含한다. 이하 같다)는 指定統計의 調查나 確認을 위하여 미리 経済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은 事項에 관하여 檢查 또는 調查資料提出의 要求를 하거나 関係人에게 質問을 할 수 있다.
 -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行하는 者는 그 催眠을 表示하는 証票를 関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.
- 第8條(秘密의 保護) 統計作成過程에서 알려진 個人 또는 法人이 나 団体의 秘密에 属하는 事項은 保護되어야 한다.
- 第9條(統計目的以外의 使用禁止) 指定統計의 作成을 위하여 蒐集 된 統計資料는 統計作成의 目的 以外에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. 第10條(統計結果의 公表) 指定統計의 一般統計을 作成한 機関의 長은 遅滯없이 그 統計表를 経済企劃院長官에게 提出하여 協議한 樣 그 統計結果을 公表하여야 한다. 다만,経済企劃院長官의 承 認을 얻은 때에는 公表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第11條(統計資料의 分類) ①統計를 作成하는 機関(以下 "統計 作成機関"이라 한다)이 統計資料를 分類하여 統計表를 作成할 때에는 経済企劃院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標準分類에 의하여야 한다.
-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計作成機関이 使用한 標準分類의 名 称은 이불 統計表에 記載하여야 한다.

- ③第1項의 標準分類에 의하여 分類하기 困難한 統計資料에 대하여는 그 統計作成機関의 長은 経済企劃院長官의 同意를 얻어 標準分類와 다른 分類을 할 수 있다.
- 第12條(統計刊行物의 発刊承認) ①統計刊行物을 発刊하고자 하는 者는 미라 経済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大統領 숙이 정하는 者가 発刊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統計刊行物의 範囲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
- 第13條(資料提出의 要求) ①経済企劃院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関係行政機関이나 地方自治団体 또는 指定機関의 長에 대하여 統計関係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.
 - ③第3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.
- 第14 條(指定統計作成에 대한 協力) 指定統計의 作成機関의 長은 指定統計를 作成하기 위하여 권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関係機関 이나 地方自治団体 또는 指定機関의 長에 대하여 必要한 協力을 要求할 수 있다.
- 第15條(権限의 姿任等) ①中央行政機関의 長은 大統領会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権限의 一部를 所属機関의 長・ 서울特別市長・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 関의 長 또는 指定機関의 長에게 姿託할 수 있다.
 - ② 付 を 特別市長・ 釜山市長 生는 道知事는 ・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

委任받은 確限의 一部를 그 중任한 機関의 長의 承認을 얻어 区庁長・市長・都守 其他 所属機関의 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. 第16條(補助金) 経済企劃院長官은 統計의 発展을 위하여 每年度 歲算의 範囲안에서 統計教育・統計開発・統計調査・統計分析 또는 統計弘報에 관한 事業을 行하는 機関에 대하여 그 運営 및 事 業에 필요한 経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.

- 第17條(罰則)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6月以下의 懲 役 또는 5萬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.
 - 1.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命令을 받고 그 申告를 하지하니하거나 虚偽의 申告을 한 者
 - 2.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들 妨害한 者
- 3. 第7條의 規定에「의한 検査를 拒否・妨害 エ는 忌避하거나
- ・ 虚偽의 調査資料量 提供하거나 虚偽의 康述을 한 者
- 4. 統計作成에 관한 事務에 従事하는 者 또는 其他의 者로서 統計作成의 結果을 故意로 真実과 相異한 것으로 만드는 行為 물 한 者
- 第18條(同前) ①統計作成에 관한 事務에 従事하는 者 또는 従事하였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 個人 또는 法人이나 団体의 秘密에 属하는 事項을 他人에게 누살하거나 盗用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萬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.
- ②第1項에 規定한 者 以外의 者로서 그 職務上 知得한 第1項

의 秘密事項을 他人에게 누설하거나 盗用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.

第19條(施行令)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정한다.

附

第1條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 第2條(経過措置) ①이 法 施行当時 従前의 規定에 의하여 行한 承記・申告 其他의 処分은 이 法에 의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. ②이 法 施行前의 行為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従前의 例에 의한다.

봉계 법시 행령

제 512호 1962년 3월 10일 개정 제 1214호 1963년 2월 25일 대통령정 개정 게 1763호 1964년 개정 대통령령 게 2505호 1966년 5월 2일 개정 대통령령 제 4182호 1969년 10월 27일 개정 대통령령 제 8116호 1976년 5월 8일

제 1 조 (목적) 이 영은 통계법 (이하 "법 "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정기관의 범위) 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 관은 특별법에 의한 법인과 정부가 자본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기업체 및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국가의 기계 인구·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련되는 통계를 작성 하는 기관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.

제 3 조 (지정*통계의 고시) 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 2 조제 2 호의 구 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 시하여야 한다.

- 1. 지정번호
- -2. 지청통제의 명칭
 - 3. 지정통계작성기관의 명칭
- 제 4 조 (일반통계의 범위) ①법 제 2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통계는 동조 제 2 호에 제기한 기관이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·부 산시·도·시(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이외의 사를 말한다)나, 군

- 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인구·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통계 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로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·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통계의 종류
- 제 5 조 (통계작성의 승인) ①지정통계 또는 일반통제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- 1. 통계작성의 목적
- 2. 조사할 사항, 조사기일 및 조시방법(보고통제에 있어서는 보고 하게 할 사항 및 보고기일)
- 3 조사표 (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보고서 및 그 결과표의 서식)
- 4. 집제사항
- 5. 통계결과의 공표예정일
- 6. 조사표(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보고서)와 그 결과표 기타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
- 7. 조사경비의 개산액
- ②경제기회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제 6 조 (조사표 등의 서식기재사항)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은 지정 통계에 있어서는 그 조사표의 서식 또는 보고통계의 보고서의 서식에 제 3 조 각호의 사항과 승인번호를 기재하고, 일반통계에 있어

서는 그 조사표의 서식 또는 보고통계의 보고저의 서식에 일반 통계의 명칭과 그 작성기관의 명칭 및 증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.

- 제7조(통계작성사무종사자의 자격)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 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. 법 체2조제2호에 제기한 기관에서 통체에 관한 조사업무에1년이상 총사한 경력이 있는 자
 - 2.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(사범대학을 포함한다) 또는 초 급대학(교육대학을 포함한다)에서 통계학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
 - 3.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통계에 관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
 - ②제 1 항에서 "통계작성에 관한 사무"라 함은 통계작성의 기획 사무나 통계의 분석사무를 말한다.
- 체용조(통계결과의 점토의뢰)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 10 조의 규 정에 의하여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 의 장에게 당해 통계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②게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, 통계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.
- 세 2 조 (통계결과의 공표 등) (1)법 제 1.0 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결 과의 공표는 관보 기타 간행물에 하여야 한다.

- ②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창은 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계결과를 공표한 때에는 그 통계자료를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 10 조 (통계간행물의 범위와 승인) ①법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은 통계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로 한다.
 - ②제 1 항의 통계 간행물중 법 제 12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발간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통계간행물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 - 1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만을 수록하여 당해 통계를 작성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
 - 2. 물가나 증권시세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서 매일 발간하는 간행물
 -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당해 간행물에 수록할 통계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11 조 (권한의 위임) 법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회 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 - 1. 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협의, 다만, 기(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군에서 작성한 통계에 관한 것에 한한다.

- 2. 법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, 다 만, 시 또는 군에서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관한 것에 한한다. 제 12 조 (보고기일의 준수 등) (1)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의 요구를 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보고를 하여야 한다.
 -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보고가 기일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때 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으며, 독촉을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대한 최신을 하여야 한다.
 - 지정기일 경과 3일후에도 보고가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는
 제 1 차 독촉장을 발부한다.
 - 2. 제 1 차 두촉장에 지정된 기일경과 3 일후에도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 2 차 독촉장을 발부한다.
 - ③제 2 차 독촉장에 지정된 기일경과 3 일후에도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그 보고를 하여야 할 기관의 장에게 보고지연 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공무원장계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④제 3 항의 구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샤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

⑤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기일내에 당해 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지정된 기일내에 예정보고기일을 명시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, 그 중간보고에 명시된 기일내에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기단체의 장은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.

⑥제4항의 규정은 제 5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

①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는 1회에 한하며, 중간보고에 명시할 예정보고기일은 본래의 지정기일로부터 6일을 초과할 수없다.

제 13 조 (통계작성에 관한 확인 등)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이나 통계결과 의 공표에 있어서의 법 제 3 조제 1 항 또는 법 제 10 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3 조제 1 항 또는 법 제 10 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법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·변경 또는 통제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제 14 조 (통계작성의 방법 등)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통계작성의 방법・주기 및 기준일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.

다만, 지정통계작성의 방법·주기 및 기준일에 관하여는 그 지정 통계의 주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华

이 영은 공포한 달로부터 사행한다.

통 계 법 시 행 규 칙

경제기획원령 제 19호 1962년 8월21일 공포 개정 경제기획원령 제 31호 1964년 4월 16일 공포 개정 경제기획원령 제 53호 1970년 9월16일 공포 개정 경제기획원령 제 79호 1976년 7월21일 공포

제1조(목 적) 이 규칙은 통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통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샤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정통계의 지정신청)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지정통계의 지정 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 조(통체작성의 승인신청)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3 조 제1 항 및 영 제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승인을 얼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자료에 관한 조사실시 예정일(보고통 계에 있어서는 당해 통계자료에 관한 보고요구 예정일 이하 같다) 30 일전까지 별지 제2 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경제기회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30 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통계자료에 관한 조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.

체 4 조 (통계작성의 중치 등의 승인신청) 통계작성기관의、장이 법 체 3 조세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"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체출하여야 한다. 제5조(통계작성의 실시 등에 관한 통보)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통계작성의 실시·중지·변경 또는 통제작성사무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중 표)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변자 제3호 서식에 의한다.

제7조(통계간행물 발간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) 영 제10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 신청서에는 당해 간행물 의 발간예정일·발행부수 및 통계자료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. 제8조(독촉장)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.

부 ` *

이 규칙은 공포한 달로부터 시행한다.

지정통계지정신청서

경제기획원장관 귀하

19.

(통계작성기관장)

[인]

통계의 명칭;

위의 통계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로 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700 - 2 - 2A 1976. 6.12 승인

190 mm × 268 mm (신문용치 54 **g /**㎡)

통계작성승인신청서

경제기획원장과 귀하

(통계작성기관장)

통계법 제 3 조게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- ⑤ 통제의 명칭
- ② 작성목적
- ③ 조사대상수(보고기과수)
- ④ 조사(보고)의 (개) 기간 (나) 대상기간(또는 기준일) (다) 주기
- (가) 업무통체 () (개) 수 집 계() (6) 작성방법(나) 조사통제→전수조사(,) (6) 합법 →표본조사() (나) 기계집계()
- ① 통계결과의 공표예정일; 년 월

일

- ⑧ 통계결과를 게재할 간행물명칭; | ⑨ 등 간행물의 발간예정시기 ; 년 ' 원
- (1) 통계관계 서류의 (가) 조사표보존기간 년 (나) 전산테이프보존기간 년 보존기간 및 방법 | (나) 전산태이프보관장소
- 11) 조사(보고)기관계통
- (D) 조사원수: 명

점 부:1, 조사표(보고서)의 서식 2부

- 2. 결과표의 서식 2부
- 3. 조사정비내역서 2부

4700-2-3A 1976. 6.12승인

190 mm'× 268 mm (신문용지 54 g / m²)

기 입 요 령

- ③란:조사대상수는 조사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당해 통계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사업체, 가구, 개인 등의 수(数)를 기입하 고, 보고기관수는 보고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최초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의 수(数)를 기입함.
- ④란(기)항:조사통계인 경우에는 현지조사 실시기간(예:1976.5.1~ 5.31)을 보고통계인 경우에는 보고요구 문서 시행일로 부터 보고 제출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입함.
- ④란(나)항:대상기간은 통계작성의 기준기간(예:1976년1월중의 생산실적을 보고받은 경우(1976.1.1~1976.1.31)을 기준일은 특정시점 (예:서울시 주간 인구조사의 경우 "1976.10.1,12시촌 재")를 기입함.
- ④란(다)항:정기적인 조사 또는 보고인 경우에는 "매년" "매월" "매 3 년" 등과 같이 기입하고, 수시로 조사 또는 고고 하게 한 경우에는 "수시"로 1회에 한 것은 "1회" 로 각각 기입함.
- ⑤란⑥란:해당난에 "〇"표 함.

- ⑤ 랜개항: 일상업무수행의 부산물로 작성되는 통계 (예:건축허가통계 인 경우에 해당됨.
- ⑤란(나)항: 현지 조사를 하여야만 작성되는 통계(예:물가통계 등) 인 경우에 해당됨.
- ⑩란(나)·(다)항:기계집계할 경우에만 해당됨.
- ⑪란:읍·면·동 → 구, 시·군→시, 도(××과)→내무부(××과)
 와 같이 기입함.
- 결과표의 서식:조사 또는 보고결과를 집계하여 작성할 결과표(안) 을 말함.
- 조사경비내역서:당해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출 항목별 로 기재하여야 함.

(별지 제 3호서식)

발급번호 게 〇 호

기정 통계 조 사 원 증

성 명:

주민등록번호:

위의 자는 통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제 〇〇 호 〇 ○통계의 조사원임을 증명함.

1 9

통계작성기관의 장

0]

4700-2-4A 1976、6.12 중인

9 cm × 6,5 cm (明分月120 g/㎡)

(별지 제 4호시식)

(27 44244)		
(기 관 명)	(기 관 명)	(기 관 명)
제호 19.	게 호 19	제호 19
个 4 :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수 신:
참 조:	참 조:	참 조 :
세 목:제 차독족장	재 목:제 차 녹족장	제 목: 제 차독촉회신문
(1) 통계승인번호:	(1) 통계승인번호:	(1) 통계승인번호 :
(2) 동 계 명:	(2) 동 제 명:	(2) 통 계 명:
		(3) 발 신번 호 :
(4) 발 신 일 자 :	(4) 발 신일 자:	(4) 발 신일 자 :
(5) 제 출기 일:	(5) 제 출기 일:	(5) 제 출기 일:
		(6) 예정제출기일 :
통계법시행령 제12조	통계법시행령 제 12 조	위와 같이 제()차
의 규정에 의하여	의 규정에 의하여위	두족에 의하여 회신함
위의 통계자르에 관	의 통계자료에 관한	니다.
한 보고를 게()	보고를 제()차 독	
차 독촉을 하니	축을 하니 19	
19 까지 제출	까지 계출하여 주시	
	기 바랍니다	
+.	*	
(기관장)	(기관장) [1]	(기관장) 엔
	1.0	(기관장) 엔.

(발신기관 보관용) (수신기관 보관용) (회 신 용) 4700-2-1A 268 mm × 190 mm ' 갱지 50 g/m²) <홍색> 1976. 6.12 승인 24. 서 직 제 5 호

근 무 성 적 평 정 표 (통 계 조 사 원

(13 도 왕) - 사무소 - 3 명정기건 19 부턴 21 및 공) - 19 - 73회 ※ 부한체원의(근무명상의 신리상과 타당성의 보산발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중합적으로 분석명기활성: 1. 확인자 명칭수요 기구의권 기 신 원 등 형 형 호 성 제 임 성 통위유기 근무상황 조사관리과장 기 위 (5) (5) (5) (5) (5) (5) (5) (6) (5) (5) ধন 🔻 광무원으로서 제반근무상황 2 : 평정자 4 무소장 성명 00 명정자 중 표 준 확인가 정 중 집 집 집 집 원
 今日
 分子
 分子
 分子
 分子
 分子
 分子

 5 4 3 2 5 4 3 2
 평정사 회인자 평정자 확인자 명생가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병정자 확인지 명정자 확 연자 병장자 확인차 명정치 확인자 명정자 확안자 평성차 확인자 명정 차 확인자 평정차

학인차 명정차 확인차

조 사 통 계 국 직 제

1975.8.14 대통령명 체 7732호전문 개정 개정 1978.3.4 대통령령 제 8874호 개정 1978.9.23 대통령령 제 9166호 개정 1979.4.6 대통령령 제 9408호

제 1 조 (진무) 조사통계국은 통계업무의 전반적인 기획,통계기준의 설정 및 종합,조정과 인구통계·산업통계·상업통계·물가통계 등 주요경제 사회 통계와 통계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제 2 조 (조직) (1)조사통계국장은 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②조사통계국장 밑에 통계심의관·통계조사관 및 자료관리관과 서 무과·기준과·조사관리과·인구통계과·산업통계과·공업통계과·상 업통계과·물가통계과·자료관리과 및 제표과들 문다.

③통계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,통계조사관과 자료관리관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,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.

(개정 78. 3.4 대칭 8874)

- 제 3 조 (공무원의 정원) 조사통계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기과 *같다.
- 제 4조(통계심의관) 통계심의관은 통계업무의 총합적 기획,통계가 군의 조정 및 통계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
- 제 5 조 (통계조사관) 통계조사관은 각종통계조사의 실시 및 방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
- 체 6 조 (자료관리관) 자료관리관은 통제조사 자료의 집중관리,처리 및 보급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.

제 7조 (서무과) ①서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- 기 **. 보안**
- 2 . 관인관수
- 3. 문서의 수발, 통제, 보존, 기타 문서관리
- 4.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, 복무, 연급, 기타 인사관리
- 5.예산운용, 회계 및 결산
- 6 .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
 - 7.물품구매 및 조달
- 8 .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 관리
- 9.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(기준과) 기준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 - 1.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설정 및 표준분류
- 2 . 통계용어의 정의
- 3. 각종 통계의 종합, 조정
- 4 통계위원회의 운영
- 5 통계기술의 지도
- 6. 통계업무의 종합적 기획 및 자급통계기관의 지도, 감독
- 7.해외통계 훈련 및 통계전문가의 교환
- 제 9 조 (조사관리과) 조사관리과는 다음 각호의 자무를 분장한다.
 - 1. 표본의 설계 및 관리
 - 2 . 통계지도의 작성
 - 3 . 통계조사원의 지도 , 감독

- 4. 국내통계 훈련
- 제 10 조 (인구통계과) 인구통계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 - 1. 인구 센서스 및 주택센서스
 - 2. 경제활동 인구조사
- 3. 인구동태 통계
- 4. 인구이동 통계
- 제 11조 (산업통계과) .산업통계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- i. 산업센서스 및 광공업 통계조사
- 2. 건설업센서스
- 3. 운수업센서스
- 4. 산업구조에 관한 통계조사
- 제 12 조 (공업통계과) 공업통계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 - 1. 광공업의 생산, 출하 및 재고에 관한 통계조사
 - 2. 기업의 시설 및 가동에 관한 통계
 - 3. 생산지수, 출하지수, 재고지수, 가동율지수등의 각종 경제자표의 현재
- 제 13조 (상업통계과) 상업통계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- 1. 도매업 및 소매업 동태조사
 - 2. 도매워 및 소매업 센서스
- 3. 백화점 조사
- 4. 도매업 및 소매업 판매지수 편제
- 5. 기타 음식업,숙박업 및 시어비스 부문에 관한 통계
- 체 14 조 (물가통계과) 물가통계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 - 1. 소매물가 조사
 - 2. 소비자 물가 지수편제
- 3. 가계조사와 가계의 소득 및 지출에 관한 통계

- 제 15조 (자료관리과) 자료관리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 - 1 . 통계정보 및 자료의 집중관리와 데이타뱅크의 운영
 - 2. 각종 통계간행물의 발간
 - 3 국제통제 자료 및 정보의 교환
- 제 16조 (제표과) 제표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- 1. 利亚계획
- 2. 통계자료의 내용 검사
 - 3 . 천공 및 검공
- 4 . 전자계산기의 운용
- 제 17조 (통계사무소)
- ①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 소속하에 통계사무소(이하 "사무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, 천라남도,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에 두는 사무소의 소장은 행정사무과으로, 그 이외의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소장은 행정주사로 보한다.
- ③사무소의 소장은 조사통계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창 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, 감독한다.
- ④ 사무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. 제 18조(위임규정)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무분담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조사통계국장이 정한다.

十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변표1). 조사통계국공무원정원표 725 계 476 계 직 요 -원(3급감류상당) 산 전 자 1.0 찬 요 원(3급을류상당) 천 가 계 산 요 원(4급감류상당) 차 계 167 요 원(4급을류상당) 계 孟 4 293 요 원(5급감류상당) 사 208 급계 ...1 . 6] 사 0 4 관 부이사관또는별정직국가공무원(2급을류상당) 10 71 31 정 사 7 66 사 58 4 해 17 A 기 22 : カ 12 직 계 7 기 계 장 기 계 원

(별표2) 통계사무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

명 칭	위치	관 할	7. 9
경기 도 통계사무소	경 기 도 수원시	73	기 左
강원도 "	강 원 도 춘천시	る	원
충청북도 "	충청부도 청주시	충청	¥ . . .
충청남도 "	충청남도 대전시	충청	i E
전라북도 "	전라북도 전주시	전 라	‡ ±
전라남도 "	전라남도 광주시	. 전라남도	및 제주도
경상북도 "	경상북도 대구시	경 상	4
경상남도 "	부 산 시	부산시 5	및 경상남도

통계사무소편제

- 제 1 조 (목 적) 조사통계국직제 제 18 조 규정에 근거하여 통계사 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관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통계사무소의 편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조 직) ①통계사무소내에 행정계와 관리계를 두고 통체사 무소 관할지역내의 필요한 지방에 연락사무소를 둔다.
 - ②통계사무소의 규모에 따라 관리계를 분할 증절할 수 있다.
- (3)통계조사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관리계와 연락사무소에 별 정직 4급조사원으로 주임을 둔다.
- ④행정계, 관리계 및 연락사무소장의 장은 일반직 4급으로 보한다. (5) 2 인이상 복무위탁지역에 선임자를 둔다.
- 제 3 조 (소 장) 통계사무소장은 조사통계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 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자휴 - 감독한다.
- 제 4 조 (사무분장) 통계자무소의 각제와 연락사무소의 분창업무는 다음과 같다.
 - ①행정계
 - 1. 인사·문서보안 등 일반행정
 - 2. 예산 회계 . 용도 등 회계행정
 - 3. 기타 조사통계에 관한 지원업무
 - (2)관리계
 - 1. 각종 조사통계 실사업무

2. 조사통계실사에 부수되는 업무

③ 연락사무소장

통계사무소장 관할업무중 일부를 지역적으로 분할 위임받아 관장 하고 소속 조사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4선임조사원

2인이상 복무위탁지역에 선임조사원을 두고 통계사무소와의 연락 과 조사표 수발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

·제 5 조 (주임의 임무) 주임은 계장 (연락사무소장 포함)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
- ①소속조사원의 실사지도
- ②불응대상의 설득
- ③조사표의 내검
- ④기타 신임조사원의 실사상 애로사항 타개.

제 6 조 (연락사무소의 위치와 관할구역) 연락사무소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.

명 칭	위치	관할 구역
경기도통계사무소 인 천 연 릭 사 무소	경기도 인천시	인천, 부천, 김포
강원도통계사무소 강 릉 연 락 사 무소	강원도 강릉시	강룡, 명주, 평창, 삼척 속초, 고성
경 북통계 사무소 안동연 라사무소	경북도 안동시	· 안동시, 안동군, 의성, 영주 상주, 문경, 울진, 청송, 영덕
경남통계사무소	경남도 마산시	에 천 마산, 진해, 충무, 고정, 의령
마 산 연 탁 차 무소		진주, 삼천포, 하동, 합양 합천, 거창, 거제
전 남 통계 사무소 제주연락사무소	제주도 제주시	체주토 전역

통계조사원'복무규정

(1963 . 2 . 13 .경제기획원훈령제 14 호)

개정 1963 . 5 . 20 . 훈령 제 16 호 1963 . 9 . 9 . 훈령 제 18 호 1964 . 5 . 9 . 관령 제 24 호 1965 . 9 . 28 . 근령 제 32 호 1968 . 6 . 7 . 콘팅 제 45 호 1970 . 1 . 19 . 훈령 제 51 호 1970 . 10 . 1 . 훈령 제 53 호 1971 . 12 . 21 . 훈령 제 55 호 1974 . 1 . 23 . 근정 제 61 호 1979 . 1 . 1 . 훈령 제 91 호

제 1 강 총 취

제 1 군 (목적) 본 규정은 통계법 제 6 조에 의한 경제기획원 초사 통계국 통계조사원 (이하 *조사원 이라 한다)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:

제 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각 시·도 통계사무소에서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조사원(별정직)에게 직용되며 조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외한다.

제 3 조 (임무) ①조사원은 조사통계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 업무에 종사한다.

②조사원은 조사통계국장의 명을 받아 정기적인 고유업무 이외에 도 특별한 조사업무와 관제 부수업무를 수행한다.

- 제4조(조사원) ①조사원은 별정작(4을 및 5갑상당)으로 한다. ②조사원의 신규임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.
- 1.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 근무기에 거주하는 자. 2.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인 자로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- 3.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4 여자조사원은 독신인 자
- ③전항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조사통계국장이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, 면접을 거쳐 임용한다.

제 3 장 교육 및 훈련

- 제 5조 (종합교육) 조사원은 년 1회 이상 종합교육을 받는다.
 제 6조 (실무교육) 조사원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무에 대한 보 중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제 7 조 (신규임용자 교육) () 신규로 임용되는 조사원은 임용 즉시 해당 조사업무에 대한 종합교육을 받고 현지에서 담당조사의 조 사목적,면접방법 등에 관한 실사훈련을 받아야 한다.
- ②조사통계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항에 의한 교육을 각 시·도 통계사무소장에게 실시케 할 수 있다.

- 제 8 조 (근무지) 조사원은 소속 통계사무소에 매일 출근하여야 한다. 단,조사원의 주재지로부터 소속 통계사무소까지 당일-출·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근관서에 복무위탁할 수 있다.
- 제 9 조 (복무감독) 조사원은 통계사무소장 (연락실 책임자)의 지 시 감독을 받아 조사업무에 종사한다.
- 제 10 조(보고서 제출) 통계사무소장은 정기적으로 복무감독 결과 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.
- 제기 조 (업무 인수인제) ①조사원은 그 직을 자직하거다 ·전보될 때에는 통계사무소장 입화하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 ②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자와 인수인계하여야 한다.
- 제 12 조 (사직) 조사원이 그 직을 사직코자 할 때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13 조 (직권면직) 공무원법 제 70 조 (직권면직)에 추가하여 다음 작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
 - 복무태만으로 조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
 되어 소속 사무소장의 상신이 있을 때
 - 2. 주재지를 무단이탈 또는 지주지를 변경하여 조사업무에 저

장을 초래하였을 때

3.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

제 5 장 여 비

- 제 14 조 (월액여비) 조 자원이 · 통계조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액여비를 지급한다.
- 제15조(지급방법)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,
- 1.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월엑여비전액을 지급한다.
 - 2.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을 15로 나눈 금액 에 출장회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.

十 本

- 1.본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정 시행이전에 임명된 별정직조사원은 본 규정 제 4 조 (임명) 2 항 2 호 및 4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
통계조사원 복무기

조 사 워 복 무 치 침

제 1 장 총 최

제기조(목적) 통계조사원복무규정(훈형 제 91호 79.1.1)을 모체 로 하여 통계조사원(이하 "조사원"이라 함)의 복무전반에 관 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근지) 조사통계국직제(대통령령 제 7732호 75.8.14)제 18 조 규정에 의하여 이 조사원복무지침을 조사통계국 규칙으로 정한다. 제 3조(지침운영의 관장) 이 지침의 운영은 조사관리과장이 관장한다.

제 2 장 임 용

제 4조 (채용 요전) 조사원의 신규채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- 1.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
- 2. 당해 근무치내 거주자
- 3. 만 20 ~ 40세의 초사업무 수행능력과 소양의 소지자
- 4.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차
- 5 : 여자조사원은 독신이거나 기혼자중 조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제 5 조(채용방법) 조사원의 신규채용 방법은 경쟁기험으로 하고 응신후보자 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.
 - 1. 서울지구는 게시 공고에 의한다.
- 2. 지방은 통계사무소장과 복무위탁관서장의 3배수 추천에 의한다. 제6조(시험방법) ①시험은 필기시험과 변전시험으로 한다.
 -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의 당해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

응용등력을 검정한다.

- ③면접시험은 조사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.
- 제7조(시범위원회 설치) 조사원의 채용을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험문제의 출제, 기타 채용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사항의 결정 등을 관장한다.
- 제 8조 (시험위원회 구정) ①위원장을 포함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위원은 조사통계국장이 위촉한다.
- ③간사적은 당연적으로 하고 조사관리과 지도담당사무관이 된다. 제 9 조 (시험위원의 준수사항) 시험위원은 자신이 관여한 사항에 관하여 일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 10조(합격자 결정) ①필기사험에서 4할이상의 득점자에 한하여 뒷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②합격자의 결정은 필기시험과 변접시험의 합계점수가 최고점인 자로 한다.
- 제 11 조 (임용) ①제 3 장 교육훈련의 제 1 9 조에 규정하는 임용후보 자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를 임용한다.
- ②선규임용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의식을 거행하여야 한다. 제12조(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) 다음의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강실한다.
 - 1. 제 19조 제 1항의 교육운현에 불응한 때
 - 2. 제 1 9 조 제 1 항제 1 호의· 기본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 한 때
 - 3. 제 19조제 1항제 2 호의 실사교육훈련 결과가 조사원으로서 부처 당하다고 판정된 때

- 제 13조(정년) 조사원의 정년은 다음과 잘다.
 - 1. 4을 상당 55세
 - 2 : 5 참 상당 50 세
- 제 14 조 (정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지침의 시행이전에 채용된 조사원은 이 지침 제 13 조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2월31일 까지 유예기간을 둔다.

제 3 장 교 육 훈 현

- 체 15조(교육훈련의 종류) 조사원의 자질향상과 조사기술 및 조 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을 실시한다.
 - 1. 종합교육훈련
 - 2. 특별교육훈련
 - 3. 재마을 교육
 - 4. 신규채용후보자 교육훈련
- 채) 6 조 (종합교육훈련) ①조사원은 년 1회 이상 직무 전반에 관 발 종합교육을 이주하여야 한다.
- ②조사관리과장은, 피교육자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 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제칭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③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특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.
- ④교육훈련성적이 수로성수에 미달된 조사원에게는 1회의 채시험 기회물 준다. -
- (5)체 4 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험의 성적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 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정계규정 제 6 4 조제 2 항에 해당

- 된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권면직의 대상이 된다.
- ⑥교육훈련성적은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단,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험의 교육훈련성적은 그려하지 아니하다.
- 제 17조(특별교육훈련) ①조사원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지무에 관한 특별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특별교육훈련의 시기, 장소,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은 따로 조사 통계국장이 정한다.
- 제 18조 (새마을교육) 조사원은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새마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임용후보자 교육훈련) (1)임용후보자는 다음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
 - 1. 기본교육훈련
 - 2. 실사교육훈련
 - ②기본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 - 1. 기본교육은 조사통계국에서 6일간 실시한다.
 - 2 · 조사관리과장은 기본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이 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· 3 · 기본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.
- ③실자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 - 1. 기본교육 이수자는 실사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
 - 2. 실사교육훈련은 소속통계사무소에서 20일간 실시한다.
- 3 · 통계사무소장은 실사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조사통계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복 무 위 탁

제 20조(목적) 조사원복무규정 제 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(시·군)에 복무위탁된 조사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1 조 (복무위탁기준) 복무위탁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재치가 소속 통계사무소와 연락사무소로부터 40㎞이상 떨어 저 있으며 뻐스 또는 열차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자 2. 전호에 해당하는 자중 인근통계사무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경 우에는 복무위탁하지 않고 인근통계사무소에 출퇴근체 할 수 있다. 제 22 조(복무위탁지역) 목무위탁관시와 그 인원은 다음과 같다.

在 李	조사당동	F자역	위탁관선	힌 원	ъΙ	虱
경기통제사무소	78	个	광주군청			
	oj <u>t</u>	予	양명 군 청	1		
	연	친	연천군성			
	#	천	포천군청	1		
	<u>0</u>]	생	안성 군정	1		
	파	÷	파추 군 청	1		
	(۱۰	al.	이천군청	1		
	. <u>g</u>	.શુ.	용입 군정	1		
	궹	택	명택 군 청	1,		
				9		

<u>소</u> ቀ	조사담	당지역	위탁	관서	인	원	F		IJ	
강원통계사무소	원 :	주.	원 주	시청		3				
	영	월	영 월	,군 청		2				
	평	창	평 창	군 청		17	진	부	ŧ	
	1	성	고성	군 청		1	현	내	1	
	삼.	척	삼 최	군 청		k.	황	지 -	3 -	
	车	ネ	속초	시청		1				
						9				
충북통계 사무소	3	수	충추	시청		2				
	영	- 6	영 동	군 청		1 / 1	내	곡 내	1	
	3 4	산		군 정		1				
	음	성	음성	군 청		1				
	제	, 천		군 청		Ļ				
	단	_양	단 양	군 청		1.				
	•				-	7				
충남통계 사무소	친	한.	in a second	시청		1				
	천	권		군성		Î				
	아	산		군 청		1				
	당	진	당 진	군 청		1				-
	. 서	산	서 산	군 청		1				
	8 -	성	3	군 청		\mathbf{J}_{-}				
	上	럥 ,		군 청		1				
	** *	천	서 천	그렇게 되고 있다.		2				
	연	70	연 기	군 청						
	, v.		-46							

全 一条	초 사담	당지역	위탁관서	인 원	刵 五
	- Ł	往	논 산 군 청		
	#	4	부여군 청	į	
	예	化	예산군청		
	7	÷	공주 군청	1	
				.14	
전북통계 사무소	1	શે. ં	진 한 군 청	1	
	납	원	남 원 군 청	İ	
	정	읍	정읍군청	2	
	. <u>a</u>	창.	고창군정		삼 원 면
	+	%F .	부 안 군 생		
	*	7	, 군 산 시 성		
	. 장	f.	장수문상		
	군	生	군 산 시청	3	
				11	
천남통계사무소	.	*	목포치정	4	
	함	평	합평군정		
	÷	천	순천 시 성	3	
	4	4	여천군청	3	
	7	4	子列王士		
	<u>4</u>	4	보성 군정		별 교 읍
18	潮	납	해 남 군 성		
	영	알	영암 군청		
	. 장	셍	장성 군 청		
	v.		-47-		

全。李	조사담당지역	기 위탁관서	્રા સ	T T
	나 주	나 주 군 청		
	<u> </u>	고흥 군성		
	강 진	강진군정		
			19	
경북통계사무소	포 항	포항시청	.2	
	경수	경주시성	2	
	김 천	김천시청	2	
	길 곡	군위군성		
	월 성	경주시성		
	선 산	선 산 군 청		
	영 천	영천군성	1	
	의 성	의성군청		
	청 송	청송군청		
	영 덕	영덕군청		
	상 주	상주 군청		
	눈 경	문 경 군 청	1	
	예 천	예천군청		
	영수	영주 군청		
	울	/울진군청		
	9 9	영일 군성	1	
			19	
		-48-		

全 。李	조사담당치역	위탁관시	લ ક્ષ	ᆲ
경남통계사무소	全	울 쇼 시 청	2	
	김 태	김해 군청	1	
	밀양	밀양 군 청	1	
	祖一一类	진추시청	3	
	삼 천 포	삼천포시청	2	
	의 뜻	의 병 군 청		
	[건 제]	거게 군 청	1	
	하 놓	하동군정	i i	
	함 방	함 양 군 청		
	궈 황.	가 장 군 청 '		
	합 천	합권군청		
	고 성	고성군청		
			16	
합 계			1 04	

제 23 조 (복무감독) ①조사원은 복무에 관하여 수타기관의 장의 치 회 감독을 받는다.

②조사원의 징계자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은 소속통 계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24 조 (근무상황 카드 비치 관리.) 수탁기관장은 조사원의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관리한다.

제25조(제청가) ①조사원은 연가·병가·공가에 관하여 수탁한지

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그 기일이 계속 5일을 초과할 때에는 소속통계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휴가는 통계사무소의 별도 계획에 의한다.
- 제 26 조 (업무계획의 통보) 통계사무소장은 매월 조사원의 월간 업무계획서 (별지서식 제 1호)를 작성 수탁관서장에게 통보하여 복무감독에 활용토록 한다.
- 제 27조(출장) 조사원은 업무계획에 의한 월간출장계획서(별지 서식 제2호)를 작성하여 수탁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출장에 임 한다.
- 제 28조(업무일지 작성) 조사원은 매일 일일업무일지(별지 서식 제 3 호)를 작성하여 수탁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, 익월 5 일까지 전월의 업무일지를 통계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29 조 (업무협조) 조사원은 통계조사기간 이외에는 수탁기관의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 30 조 (복무감독 결과통보) 수탁관서장은 조사원의 복무감독 결과를 (별지서식 4~1호)매분기마다 익월 10일까지 통계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.
- 제 31 조 (소집) ①조사원은 다음에 의하여 통계사무소에 등청하여 야 한다.
 - 1. 정기소집일 월 2 회
 - . 2 수사소집일 사무소장의 통보가 있을 때
 - ②통계사무소장은 조사원 소집일자를 수탁관시장에게 사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중 진 후 보 차 결 정

제 1 절 종 최

세 32 조(목적) 조사원의 승진에 따르는 경력, 훈련성적 및 근무성 * 적 평정에 관한 표를 작성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체 33 조 (평청시기) 중진에 필요한 평정은 매년 +6월말과 12월말 을 기준하여 년 2회 실시한다.

체 2 절 경 력 평 정

제 34 조(대상) 경력평정 대상은 평정기준일 기준 5년이상 근무한 5급 조사원으로 한다.

제 35 조 (평청자와 확인자) ① 명정자는 조사관리과 지도담당사무관과 통계사무소장이 되고, 확인자는 조사관리과장이 된다.

②경력명정은 다음의 경력평정표에 의한다.

경 력 경 정 표

작성일 년 월 일

				71787	5	1 12	린
태	상 자	종합점 수		স্থ	정	* F	
4		가본경력		직, 위			
직 급				성명		્રી	
				확	રા	과	
성 명		초과경력		직 위			
				성명		થ	
경력별	경력구분	발행년원 (부터-끼	채 ?	박 년 수	স্থ	정 점	
기본경력							
초과경력	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					1

제 36 조 (경력의 평정점) ①경력의 총 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. ②기본경력의 평정점은 30점을, 초과경력의 평정점은 5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며, 경력별 명정점은 다음과 같다. 단, 1년 미만은 가산하지 않는다.

7		분	통	计	뒝	정	祖
**		君				35	
7)	본 , 경	₹ .				30	
差	과 경	력	i -	• 2 년		1	
			3 💠	, 5 년		3	
		$\Delta x = 0$		10 년이상		5	
		•		17.271.6		.	

제 3 절 훈 권 성 적 평 정

체 37조(훈련성적의 명정) 조사원의 종합교육 훈련성적을 대상으로 하고, 그 성격이 만접의 6할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.

제 38 조 (훈련의 평정점)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5 점을 만접으로 하며, 종합교육훈련을 20점, 재마을교육을 5점으로 한다.

제 4 절 가 참 점

제 39조(표창가점) ①조사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고대에는 다음과 같이 가접한다.

- 1:, 혼 상 5
- 2. 포 장 5
- 3. 대통령포창 4
- 4. 국무총리표창 3
- 5. 부총리표창 . 2
- 6. 全 장 표 광 、 1
- ② 정부포상규정과 기타·포상규정에 의한 포상은 위에 준하여 가접한다.

- 세40조(근태감점) 조사원이 근태불량으로 시밀서 및 징계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.
 - 1. 감 봉 5점
 - 2. 전 책 4점
 - 3. 경고 처분 1회 2점, 2회 3점
 - 4. 시말서징구 2회 1점

제 5 절 근 무 성 적 평 정

- 제 41조(목적) 조사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하며 통계조사 업무의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42조(기준)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사원의 책임성, 직무의 질,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설득력, 협조성, 품위 유지, 근무실적 등을 평가한다.(서식 제 5 호)
 - 1.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할 것
- 2.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
- 3. 조사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
- 제 43 조 (근무성적평정표) 근무성적평정표는 4 급과 5 급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
- 제 44조 (명정자와 확인자) 명정자는 통계사무소장 및 지도담당사무 관이 되고 확인자는 조사관리과장이 된다.
- 제 45 조 (명정의 시기) 근무명정은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한다.
- 제46조(영정점의 분포비율) 형정과 확인 결과는 다음의 분포.
 - 비율에 맞도록 하되 "가"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"양"
- 에 합산한다.

· 子》 是	者 宁	분 포 비 율 .
· †	37 이 상	10 %
े १	29 ~ 36	30 %
수 왕	16 ~ 28	50.%
刘	15 이 하	10 %

- 세 47 조 (명정체점) 각 명정요소의 총점을 80점 만점으로 하며 평. 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4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.
- 제 48조(결과보고)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조사통계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 49 조 (평정결과의 활용)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에 반 영지켜야 한다.
- 세50조(명정의 공개급치) 근무성적 명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.

제 6 절 ... 승진후보자명부 ...

제 51 조 (명부작성) ①후보명부는 승진요건을 갖춘 조사원을 내상으로 하여 작성하고 배점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포상에 의한 가찬 접과 근태에 의한 감점은 별도 가감한다.

			345		57.4.5 S.4.
1 7		분	ыÂ		점
	70 A.	ш-			□
경		럑		3.5	
				2000年第11日本	
一 主	현 성	: 작 📗		2.5	37
를 1 1	무 정	적기		40	
	계				
	્યા			100	

- ②가점 및 감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 및 감점을 계산한 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.
- ③후보자 명부는 다음 서식에 의해 조사관리과장이 작성한다.

승진후보자명부

د د	* &	세며	총평정점	₽8	정	점	내	9	ษ) 77
4. TI	makene "}	0 0	0008	근무성적	경력	훈련성적	가접	감 점	

- 제 52조(명부작성 기준일) '명부는 6월말·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한다.
- 제 53 조 (동점자의 순위)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.
 - 1. 근무성적 평정결과 상위자
- 2. 장기 근속자

게 성장 중

제 54 조 (목적) 조사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5 조 (대상자) 조사원의 승진은 소속통계사무소에 재직하는 자로 한다 제 56 조 (승진방법) 조사원의 승진은 후보자 명부 및 특별승진방법 에 의한다.

제 57 조 (후보자 명부심사) 조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 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조사통계국장이 결정한다.

- 제 58 조 (특별승진) 5 급 조사원으로서 부종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특별 승진시킨다.
- 제59조(승진의 제한)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.
- 기. 조사원경력 5년 미만인 자
- 2. 경고처분을 받은 차
- 3. 징계처분 자

세 7 장 포 생

- 제 60 조(목적) 조사원의 근무의욕 증진과 사기 앙양을 위하여 조사 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게 61조 (대상자) 조샤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 - 1. 국가에 뚜렷한 공직을 세운 차
 - 2.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차
 - 3.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
 - 4. 창의성을 발휘하여 통계조사업무에 현저한 개선효과를 기둔 자
 - 5. 직무수행상 채임성이 특히 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차
 - 6.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
 - 7.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자
- 제 62 초 (포상구분) 포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- 1. 훈 장
 - 2 . 포 . 장
 - 3. 대 통 령 표창
 - 4. 국무총리표창
 - 5. 부총리표 창
 - 6. 국 장 표 창

제63조(추천) ①훈장·포장·대통령표창·국무총리표창 등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추천한다.

②부총리표창은 조사통계국장이 추천한다.

③조사통계국장 표창은 조사관리과장이 추천한다.

제 64 조 (수상자 결정) 공적조서에 의하여 해당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세 8 장 근 태

제65 조(목적) 조자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66 조 (근태기준) 근태기준은 다음과 같다.

₹ #	회	.	de recei e reco-reconi de conjugue que de dissipue de la conjugue	ŧ.
1. 지 참		3 \$4	1 2	
2. 무 단 결근 사 무 소		3 3	시 말	
복 무 위탁 3. 조사표 불실기재		2 회 7 전이상	시말	A
가 계 조 사 4. 조사표 기일내 미제출		10 전이상 5 건이상	시 말	A
(특별한 사유없이) 5. 각종 업무지시 불이행	3	건 이 상	시 말	
6. 시말서 계출	3	회이상	4	***

제 67 조 (징계사유) 조사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.

- 1. 식무상 의무 위반
- 2. 직무 태만
- 3. 품위 손상
 - 4. 지시병병 불복종

제 68 조 (징계 상신) 조사원에 대한 징계상신은 다음에 의하여 조사관리과장과 통계사무소장이 한다.

- 1. 5급 조사원은 통계사무소장이 한다.
 - 2. 4급 조사원은 통제사무소장의 제정에 의하여 조사판리파장이 한다·

제 69조 (장계의 종류) 장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1 . 제재 징계
 - 1) 공개경고 처분
 - 2) 견 책
 - 3) 감 봉
 - 2 . 메제징계
 - 1) 직권면직
- 2) 과 면

제 70조 (징계양정 기준) 장계양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What is a second of the second open by a difference of the second of the	the second secon	
유 형 경계사유	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미위의 도가 경하고 과오로 인정되는 경우
1. 허위조사표들 작성	직권면적•파면	경고처분·견책·감봉
2 · 지시 및 명령위반 3 · 품위 손상		
4. 조사업무를 기개월		
이상 关할 때		
5. 근무태만 6. 직장 무단이탈		
7. 영리업무 및 겸직		
위반		
8. 제재정계 2회이상		
9. 조사표 작성부실	*	

<u>声</u> 3

제1조 본 규정은 79.11.1부터 시행한다.

서식 1호 (월)업 무계회서

기 간					성명		(c
업무명	5		l Ø .	15	2.0	25	3
			 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			,
							4 4 1
							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
		15					
						*	
					1		
							and the second
			1. (1.)				
			100				
					1		
		y sky s					
			1.				
		 91					
	1						
							1 1
		y the profit			- 1:		
		3. A.					
						· · .	
		in the state of th					
			2.0				
	البيتا	Sec. 18 18 19 19 19				4	
			-61-				

(월)	업	무	계	회	25	八	
---	----	---	---	---	---	----	---	--

											성	日の			(ବ୍
7	간		-		3 % To					-					
업무명				5		10		1	5	2	2.0		25		30
		111		j. +) i.		1	, 1	1 1	- 1 1		₹ .[·]		· i -,	T
					-										
*** **** **** **** **** **** **** **** ****		1.4				-									i i
					: :		1.6	A.							
								1	, .	1					
_	•						,	4							12
					1,-										
			٠.		1									-	
	. 21		*					5				4 4 S			
							er T							•	
			**					~ .						. ~	سد د رد د رد د ر
and the second		- 1													
ر بر الله الله الله الله الله الله الله الل														~ .	
Andrew State of the Control of the C			,			1.1			e y Kanag					 	
····													-	٠.,	
								• •	-;			2 - 2			
				ŀ											:
							***			- >					
	4							4.						-	
	*.				,		3 4								. · .
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		-											غيد () أف
												S. S.		-	
	-		1 4			-								- 1	
			. 1								- 7				
		-				-									
						, .									
			· · · · ·				<i>.</i>	.				$\frac{1}{t} = \frac{2}{t_{c,s}}$			
<u> </u>		ببيا	1	ĻĮ.		_1:1	11	لحت	ستسل		يحبنا	لبلا		1	للنا

서식 2 호 출장 계회서

정명:								<u> </u>					
7	간	ŧ	장 목	적		÷	행 여	정	사	항		ㅂ]	立
									2 1 3				
			A. I					4	n u				1.3
				- 3									
		e i seri Gran		1									
							* * *	1	1 4				
									1				
							• .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		er e		٠ <u>:</u>
			1.		ľ					<i>t</i>			
										*, '			
					1								
										* *			,
								·į.	ŝ				
		*								- , , , ,		:	,
		,	* .			٠.			i	***			
				*.		: .				and the			V.
						450				٠	÷	M.	
				* * *									
	-											- A - 2	
										S. 4			
				1.1.1		Steries .	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						
							12.			, ÿ			
	v r y k						27 4 - 1 - 2	•					
					. 7			1941.					
					1		,		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<u> </u>		. ئىلىدىدا	ر آن ماکسکور پی است

세43호	업	- 무 일	지 	- 19		
출강자	출장지		출장목계			S S
출장사항		업무처리	<u>사항</u>			
키 타 와 항				곝	계 장	一斗 る
출장자	출장지		출장목조	1		
a o *1 출장사항	e 6 €	업무처리	│			
AND STOCKING TO SEE THE STOCKING OF THE SECOND	Sec. 14. 14. 14.					
기 타 사 항						A &

업 무 일 지

	14.,	医自己病 禁煙區 基金	100	19	a level 🕶
출장차	출장지		출장목적		
출장 사 항		업부 처리	사항		
기타사항					과장
				M .	

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사항 업무처리 사항 기타사항 결 주임 담당계정 제

취취 4 − i 호

복무위탁자근무실태('년 /4분기) (정명)

1, 근무현황

利用	출 장	결 근	지 참	병가	연 가	광 가	· 山
							N O
41.							

- 2. 수탁기관장 의견
 - 1) 품 의:
 - 2) 정 실 성:
- -3) ∼인화협조:
- ,4) 건의내용**:**

의 시 위 : 확 있 자 성 명 :

서식4-2호 조사원근무실태(년 /4분기)

to to x	-	1	Ŧ		현	황	
조 사 원 성 명	42	출장	결근	지참	병가	연가	공 가
					The state of the s	T. Company	
		An the province of over the principle way — worth			Agency or artis,, one general declaration of the second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
					The second secon		
	24		*	State of the state		need-order on the control extended	
		*	The state of the s			•	
	계	and the second s					
operation and the second secon							
	- Commission of the Commission		Avezago establishment			an Comment of Comment	
registration of the control of the c	arricocounts of collection (solidates)						
	계	20					
		and the state of t		ŀ			
	계		7 /	1			
		-69-					

사작제 5 <u>호</u> 근무성적명정표 (통계조사원)

生			사무	〉 全。						1			3	평	정기	l 간					¥.					1	u	(王)	2 اد						
] 급:														1.9					牛									수 우 양	(74 58 32	점 ^ 접 ^	7 (5 i	상 3 집 7 집) ···) ···	
^부 하직원의	<u></u>	구명.	성의	ጚ	[로	성고	- -/_ai	- 카당	성호		보장	라 <u>-</u>	록	19 객	과 조	1 ;	<u>-</u> -2)	에	까 의	3749		E al-	24	o =		Н. 2	ma)	가 가힐	(3	30	점호	ा	하-) …	
명 정소요 및 배점	식	무성	의 질			~ 지수		<u>د</u>	1	<u>(# 144</u> 47,59		30.0					T			857	i ii T	A (1.27)			Prince Police			ng y		9			확인 -	家院	
) 정(명권		(7) 		-1		5)			(5)						(8)				(5)	기 			异, (5)			조사관리과장 성명:							
및 절 수	전호 를 있구	발 참 출카 	? ?	五 五 二	필 을 있	요 힌 깆 는가	· 추. ?	이 시 교	대 갖	한 고	。 설득 있는	·력을 -가?	12	ે `શ	l÷	크야 가 ?	차 양리나		잭 갖고	ግ / -	ז 3 } י	4	节上	위 ' ?	르서 구지 ! 호	ę	11 44 21	<u>1</u> 300	4.00		4.1		B 경.	机器站	무소
-آ- (ب _ه (چ (4 W 1 C 4	153112		Charles San	-	우 4	ु 3	フト 2	子 5	40.00	양 3	7F 2	 5			7} 2	र्न 8	우 6	 - 4			; ; .		ુ; 3	카	6. 16. 155	٩	200)		명 환	정 지 인 자	· 축		<u>로</u>
명정자							Agricon Agrico														1		•	3	2	5	4	3		2	*	접	큄	7	
확인자		100			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정자					_				e e e															7.13 7.2								2 2 2 2 3 4 3			
확인자 명정자				1	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확인자																				1		1													
명정자				-									1.4											70 A											
확인자									*									720						70 6											
명정기													<i>x</i>		4																				
확인자							a,																			er Al see See Mi						10 P			
평정자										1,1																									
확인자 : 병정자 :			-								- 1																			1000					
증 3 수 확인자			100											/				•						1 () () () () () () () () () (
명정자 -						1															X										i i				
확인자						1/2															1.5										¥Χ.				
명정자								TV S					群 "					2.5				10/-10	9						V W						1
확인자																		i				ielić T) 		34.									
명정자																							TO SERVICE SER										<u> </u>		
확인자			ļ .																1		ja J				150 C		27.7								
명정자														105								in i	/				かば								